

교원인사위원회규정

제정 1999. .
 개정 2007. 3. 21.
 개정 2008. 2. 28.
 개정 2009. 2. 20.
 개정 2012. 3. 1.
 개정 2012. 10. 1.
 개정 2017. 5. 1.
 개정 2019. 6. 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정관 제50조에 의거 총장이 임명하는 7인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③ 담당부서에서는 총장에게 인사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시 직급별, 소속별, 남 녀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를 추천한다.

제3조(위원장) 위원장은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장 유고시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의 전임교원과 초빙교원을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7.5.1. 개정)

3. 기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인사위원회는 전임교원의 승진임용 및 기간제, 계약제 임용 제청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 임용 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가. 연구실적 및 전문 영역의 학회활동

나.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다. 교육 관계법령의 준수 및 교원으로서 품의 유지

5. (삭제) (2017.5.1. 개정)

6. 교원산학연구학기제 대상자에 관한 사항

7. 강사 및 겸임교원의 임용 동의에 관한 사항(단, 강사의 경우 스쿨 강사임용심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의 검증을 포함하여 심의·의결함)

제5조(간사) 인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총장이 임명한다.

제6조(회의) 인사위원회의 소집은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인사위원회의 개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의 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참석 등 위원회와 관련된 활동으로 인하여 지득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운영)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 강사에 관한 사항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